

**환경부
보도자료**

2004년 12월 15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 04. 12. 배포
☐ 사진 없음
☐ 총 6쪽

대 기 보 전 국	박광석 과 장	전화	02-2110-7932
대기총량제도와	배치호 사무관	(메일)	pylonbch@m.e.go.kr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 ◇ '07.7.1부터 1종사업장, '09.7.1부터 1~3종사업장 중에서 오염 물질 일정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총량관리제 시행
- ◇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3천대 이상인 판매자,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
- ◇ 10대 이상 자동차 보유 공공기관, 신차 구매시 저공해자동차 일정 비율 이상 구매

- ☐ 정부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1~3종사업장에 대하여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였다.
- ☐ 동 시행령은 지난 6월 24일 입법예고된 후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12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 ☐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높거나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을 입법 예고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지역, 용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市로 함

-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받고, 사업장 설치·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정함
 - '07.7.1부터는 1종사업장 중에서 또는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에서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 '09.7.1부터는 1-3종사업장 중에서 또는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에서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 할당받은 연간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 총량에서 삭감하며,
 -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별 1kg당 부과금액, 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한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
-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연평균 3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화물자동차를 300대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보급 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여야 함
- 또한,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출연연구기관·지방공사 및 공직유관단체 등)은 신차 구매시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20%) 이상 구매하여야 함.

□ 정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12월 중에 공포하여 내년부터 동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주요골자

〈붙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주요골자

1.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

구 분	권 역 범 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24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2.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함.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 제2종 저공해자동차 : 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 경유·휘발유·가스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3.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가. 대상 사업장 범위

☐ 2007년 7월 1일부터는

- 1종사업장 중에서 또는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에서
 -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NOx 30톤, SOx 20톤, 먼지 1.5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제 시행

□ 2009년 7월 1일부터는

- 1~3종사업장 중에서 또는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에서
 -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제 시행

※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의 보일러 또는 간접가열 연소시설

- 200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사업장 중 2% 정도의 사업장에 총량제를 시행하여 대기관리권역내 점오염원 중 NOx 배출량의 84%, SOx 배출량 78%, 먼지 배출량의 57% 관리 가능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

구분	NOx	SOx	먼지	비고
'07.7.1이후	30톤 초과	20톤 초과	1.5톤 초과	1종 사업장 중 (전체 사업장의 0.9% 수준)
'09.7.1이후	4톤 초과	4톤 초과	0.2톤 초과	1-3종 사업장 중 (전체 사업장의 2% 수준)

※ 총계의 ()는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중 총량규제 사업장 비율('01년 기준)

나.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

다. 배출허용총량 위반시 제재 수단

□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방법

-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 위반횟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

□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1kg당 부과금액×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부과금 산정방법〉

구분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 미만	2% 4%	4% 8%	8% 10%	10% 20%	20% 30%	30% 40%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1 심역	2 심역	3 심역
질소 산화물	2,900원															
황산화물	4,200원	1.2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먼지	6,500원															

비 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배출허용총량 초과율(퍼센트)} = (\text{연간 배출량} - \text{배출허용총량}) \div \text{배출허용총량} \times 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4. 저공해자동차 보급

가.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 사업자의 범위

- ☐ 3년간의 년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판매자는
 -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수립·이행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

- ☐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차량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출자법인,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

5. 권한의 위임

-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설치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부과금의 부과 등 관할구역별 총량관리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 ☐ 기초조사 실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접수, 배출허용총량 조정 등 대기관리권역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권한을 경인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함